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145
----------	------

2021년 3월 5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년 2월 5일 이영실 의원의 19명
2. 회부일자 : 2021년 2월 9일
3. 상정일자 :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1년 3월 2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이영실 의원)

1. 제안이유

- 16개월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 등 잇단 아동학대 사건으로 시민들의 공분이 확산되고 있으며, 정부와 국회에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강력대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음.
- 아동학대 예방에 있어 특히 학대위험 아동 조기발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바, 학대위기에 노출된 아동을 조기발견하여 사전적·

예방적으로 고위험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자치구와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지원하여 아이들이 아동학대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서울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아동학대 위기징후 조기발견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자치구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의4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Ⅲ.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1 개정안의 취지

- 2020년 서울에서 아동학대로 신고접수된 4,369건 중 2,670건이 학대사례로 판정받은 등 아동학대 사건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하였으며, 심각한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아동인구가 감소추세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서울의 아동학대 발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실정임.

연도	신고접수						아동학대의심사례 초기개입결과				
	계	아동학대의심사례			일반 상담	동일 신고	계	학대 사례	조기 지원 사례	일반 사례	진행 사례
		계	응급	단순							
'20.	4,369	4,132	158	3,974	180	57	4,132	2,670	62	1,241	159
'19	3,571	3,353	86	3,267	191	27	3,353	2,193	119	1,025	16
'18	3,660	3,399	98	3,301	222	39	3,399	2,227	131	994	47
'17	3,812	3,398	274	3,124	379	35	3,398	2,307	225	863	3

- 게다가 지난해 16개월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을 비롯하여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됨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강화 요구가 크게 대두되고 있음.
- 이에 동 개정안은 아동학대 위험군을 사전에 발굴하여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자치구와 함께 구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임..

2 개정안의 주요사항 검토

□ 아동학대 위기징후 조기발견·보호 지원(안 제11조의4 신설)

- 개정안은 아동학대 위기아동을 조기발견·보호할 수 있도록 자치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조의4(아동학대 위기징후 조기발견) 시장은 아동학대 위기아동을 조기발견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자치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현행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신고에 의한 사후처벌에 집중되어 위기상황 발생 예방에는 한계가 있는 바, 조기에 개입하여 학대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안¹⁾이라 할 수 있을 것임.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2018년부터 보건복지부 e-아동행복지원 시스템을 통해 장기결석, 예방접종 미 실시, 건강검진 미 실시 등 각종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아동학대 등의 위험징후를 예측하고,

1)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빅데이터를 활용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구축방안 기초연구」, pp. 195.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견될 경우에는 자치구 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복지플래너(공무원)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조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실제 위기상태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음.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운영 프로세스

- ① 41종 예측변수에 해당하는 대상 아동(매 차수 약 70만명) 정보 수집
- ② 사망자·해외출국자 제외
- ③ 예측 변수(정보) 별 가중치 적용, 점검대상(약 2만명) 확정
- ④ 대상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공무원이 아동가정을 방문, 학대·서비스 연계필요 여부 확인 → 학대의심 신고 및 서비스 연계

- 특히 최근 16개월 입양아동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시민들의 큰 관심과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3년간 2회 이상 학대 신고 된 아동 658명, e-아동행복시스템을 통해 파악된 방임위험 아동 34,607명을 대상으로 3월까지 긴급 점검을 추진 중에 있음.
- 한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여성아동분야 방문사업을 통해 만 3세 가정양육수당 수급가정 및 보육료 미수급가정 등 양육가정에 예방적 측면의 보편방문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신고된 가구, 보건복지부의 e-아동행복시스템 대상 아동 가정 등 돌봄위기가구 방문사업을 아동학대 예방 및 재발 방지 측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바, 아동학대 예방 및 모니터링, 사후 관리에 있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체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성도 있음.

3 종합 의견

- 동 개정안은 아동학대 위기징후 조기발견을 통한 선제적인 아동 보호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아동학대 예방·방지를 위해 그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임. 또한 입법적 차원에서도 타 법률 및 조례와의 관계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실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145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2월 04일

발 의 자 : 이영실, 강동길, 김경영,
김경우, 김인제, 김제리,
김혜련, 김화숙, 문병훈,
박기열, 박기재, 이경선,
이병도, 이상훈, 이승미,
이정인, 임종국, 장인홍,
정진철, 조상호 의원(20
명)

1. 제안이유

- 16개월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 등 잇단 아동학대 사건으로 시민들의 공분이 확산되고 있으며, 정부와 국회에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강력대책이 연이어 발표하고 있음.
- 아동학대 예방에 있어 특히 학대위험 아동 조기발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바, 학대위기에 노출된 아동을 조기발견하여 사전적·예방적으로 고위험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자치구와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지원하여 아이들이 아동학대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서울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아동학대 위기징후 조기발견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자치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의4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첨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4(아동학대 위기징후 조기발견) 시장은 아동학대 위기 아동을 조기 발견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자치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u>제11조의4(아동학대 위기징후 조</u> <u>기발견) 시장은 아동학대 위기</u> <u>아동을 조기발견하여 보호할 수</u> <u>있도록 자치구와 협력체계를 구</u> <u>축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u> <u>한다.</u></p>